

# 「경남 60+교육센터」 노인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규정

신설 2019. 4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정의)** 「경남 60+교육센터」 노인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이란 만60세이상의 경남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희망하는 장소에서 강좌를 제공하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를 말한다.

## 제2장 강좌, 시간, 장소 등

**제2조(강좌내용)** 강좌는 노후 취업 및 사회활동을 위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과정, 취업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개인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.

**제3조(교육시간)** ① 학습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강좌는 연 1회, 1주에 3시간까지 가능하다.

**제4조(교육장소)** ① 교육장소는 경상남도내의 공공시설, 직장, 사회복지시설, 마을회관, 경로당 등 학습자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단, 강사의 사설근무지, 개인교습소 등에서의 강의는 금지한다.

## 제3장 학습자

**제5조(신청자격)** ① 학습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된 성인(만 60세 이상)으로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② 학습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신청, 타인명의 도용 및 구성원의 동의 없이 강좌를 신청한 경우 해당 강좌는 취소한다.

**제6조(수강료 및 재료비)**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재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부담하되 강사와 학습자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책정한다.

**제7조(강좌신청)** 강좌 신청 시 강좌명, 강좌내용, 교육시간, 교육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강좌신청 제한)** ① 학습자는 연 1회 1강좌를 원칙으로 하되, 이전 수강한 동일 강좌를 신청할 수 없으며, 2개 강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.

② 학습자 개인 및 단체, 기관은 영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강좌를 신청할 수 없다(단, 학습자가 고령자일 경우 기관 담당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).

**제9조(준수사항)** ① 학습자는 강좌의 개설 목적 및 취지에 맞추어 성실히 학습을 수행하고 향후 계획에 맞추어 실천하여야 한다.

② 학습자는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출석 불성실 등의 이유로 강좌가 중지될 경우에는 향후 1년 내에서 강좌를 신청할 수 없다.

③ 학습자는 지각 및 결석이 5회 이상 계속될 경우 참여하는 강좌를 포함, 향후 3년 간 강의를 신청할 수 없다.

④ 강좌는 학습자 출석률이 80%이하가 될 경우 자동으로 폐강될 수 있다.

⑤ 단, 신청자가 질병,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 제4장 강사

**제10조(강사자격)** 강사는 경상남도예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 후 강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
2. 해당 분야의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
3. 온라인 강사용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자
4. 기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11조(강사등록)** ① 홈페이지에 강의계획, 경력, 자격, 봉사활동내역 등을 등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.

② 서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서류접수의 취소가 불가능하며, 기타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**제12조(강좌운영계획)** ① 강사는 학습자의 강좌 신청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학습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강좌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강사는 교육장소 및 운영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학습자들의 동의를 얻어 “진흥원”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강의의 장소, 시간, 내용 등 변경은 3회에 한하며,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자동으로 폐강된다.

**제13조(학습자 관리)** ① 강사는 강의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학습자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. 이를 어길 시(예 : 강좌 시작시간 지연, 단축강의, 출결 조작), “진흥원”에서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.

② 강사는 학습자의 서명을 받아 출석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종강 후 원본은 “진흥원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강사는 현장사진을 포함한 학습일지 및 출석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매회 강의 종료 후 24시간을 넘기지 아니한다.

④ 학습일지 및 출석부 제출 기한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, 향후 강사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⑤ 강사는 학습자가 부담하는 재료비 또는 교육장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및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14조(강사료)** ① 1시간을 기준으로 50,000원으로 한다. 단,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는 조정될 수 있다.

② 도서산간 벽지 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육장소는 진흥원장의 승인을 얻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(공무원여비규정 준수).

**제15조(준수사항)** ① 강사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직업의식 및 직로 등과 관련하여 수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. 또한 향후 이와 관련한 사회활동 방법과 상담 지도를 실시한다.

② 강사는 “진흥원”에서 실시하는 강사 직무연수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강사의 책임으로 한다.

③ 강사는 강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강좌 평가를 통해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강사 지원을 할 수 없다.

## 제5장 강좌선정 및 강사선정

**제16조(강좌선정 및 배정)** ① 강좌는 본 “진흥원”에서 공모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한다.

② 강좌는 타당성, 참여대상, 프로그램 특성, 사회활동 계획, 교육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.

**제17조(강사선정 및 배정)** ① 강사는 본 “진흥원”에서 등록된 강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, 적합한 강사가 없을 경우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.

② 강사는 개인정보, 경력, 자격, 이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.

③ 강사는 배정받을 수 있는 강좌를 연간 2개 강좌로 제한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(거리관계 등)로 강사를 구할 수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강사는 학습자의 강의평가를 통해 1/3이상 부적합의견이 나왔을 때 향후 강사선정 시 배제할 수 있다.

**제18조(현장점검)** 투명하고 공정한 강좌 운영을 위해 수시로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.

**제19조(강좌폐강)** ① 학습자의 출석률이 3회 연속 80%미만이거나 누적 출석률이 80%미만일 경우, 강좌를 폐강한다.

② 단, 학습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하되 “진흥원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부칙

이 규정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.